

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) 법 제13조제1항의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1항제5호에서의 「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」에 따라 운영한다.

제3조(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하는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·정보 등을 현행화하고, 분실·도난·훼손·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

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119정보통신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119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) ①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.

②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·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소방통신망 구축) ①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음영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통신 수신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경

우에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초고주파(UHF)망, 고주파(VHF)망, 재난 안전통신망(PS-LTE), 위성통신망 등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) ①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의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에 따라 다른 지역 소방본부의 통신망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)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·도 소방본부의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119긴급신고 접수·공동대응·이관에 관한 사항
2. 119정보통신시스템 가동 및 장애 조치에 관한 사항
3. 소방정보통신망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4. 119정보통신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
5. 운영인력 및 조직 등 유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
6.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

- ②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서면평가는 모든 시·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,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·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③ 소방본부장은 평가를 위하여 시·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